

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운영회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9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8월 09일
발 의 자: 운영회 의원(1명)
찬 성 자: 곽향기, 김춘곤, 김태수,
박상혁, 이경숙, 이병운,
이종배, 이종환, 채수지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러브버그(붉은등우단털파리)나 텅커벨(동양하루살이)과 같은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, 그 발생시기가 빨라지고 발생지역 또한 점차 확산하는 추세임.
- 현행 법률과 조례상 관련 규정의 미비로, 시민들의 민원 폭증에도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올해 5월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8,121건이며, 이는 1년 전보다 약 45% 증가한 것임.
-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되,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하여 생태계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'대발생 곤충'에 대하여 정의함.(안 제2조)
- 나.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다.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라.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사업을 규정함.(안 제6조)

마. 대발생 곤충 관리를 위한 기관,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
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대발생 곤충”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, 주거·상업 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,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하

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1.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
2.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
3.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
4.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
5.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
2.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
3.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
4.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·연구 및 전문가 자문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 등에게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(지원사업)등에 따라 대발생 곤충 친환경적 방제 지원 운영 비용, 방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 비용,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교육 및 홍보비용,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·연구 및 전문가 자문 비용 등이 발생하지만 관련부서 확인결과 기시행사업¹⁾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 - 또한 제7조(협력체계 구축)²⁾은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오 희 선
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[기시행사업] 25개 자치구에 방제관련 교부금 균등교부 (안 제6조(지원사업)제2항에 해당)

○ 빈대 등 돌발해충(곤충) 예방 및 방제 지원

- (변경 전) 빈대 예방 및 방제 지원

- (변경사유) 최근 도심에서 빈대 외 동양하루살이, 러브버그 등이 돌발적으로 대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로 인한 시민 불편 야기됨에 따라 빈대를 포함한 돌발해충(곤충)으로 방제대상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○ 사업기간: 2024. 6월 ~ 12월

○ 주요내용: 25개 자치구별 10,000천원 균등교부(총 250,000천원)

⇒ 관련부서 문의결과(서울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) 균등배분한 교부금을 통해 자치구에서 방제 지원 운영, 방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,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교육, 전문가 자문 비용 등으로 지출할 예정이기에 기시행 사업으로 판단함

※ 빈대 등 돌발해충(곤충) 예방 및 방제 지원사업 교부계획(감염병관리과-13395, 2024. 6. 13.)

2) 협력체계 구축(업무협조)은 통상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추계대상에서 제외함